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명의대여 처벌 강화 〉

■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043호)

2026. 9.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명의대여 처벌 강화(안 제33조제1항제4호, 제40조제1항제4호 신설 등)	2
※ 참고자료	6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성훈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4. 2.

다. 회 부 일 : 2026. 4.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대여료 수익이 과태료보다 높은 경우 이를 감수하고 명의를 빌려주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명의대여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고, 명의대여를 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명의대여 금지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제4호, 제40조제1항제4호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명의대여 처벌 강화

(안 제33조제1항제4호, 제40조제1항제4호 신설 등)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명의를 대여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3조(등록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중 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 3. (생략) <u><신설></u> ② ~ ④ (생략)	제33조(등록취소 등) ①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28조를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 한 경우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u><신설></u> ② (생략)	제40조(벌칙)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28조를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자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7. (생략)	제41조(과태료) ① ----- ----- -----. 1. ~ 7.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8. 제28조를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자	<삭제>
9. (생략)	9.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¹⁾ 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는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대여료 수익이 과태료보다 높은 경우 이를 감수하고 명의를 빌려주는 문제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²⁾

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8조(명의 대여의 금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제28조를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자

2) 2025년 12월 말 기준 총 6,140개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렇게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전체 매출액은 2014년 1조 5,041억원에서 2024년에 9조 5,076억원으로 증가하였음.

[표] 연도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매출 및 종사자 현황

(단위: 억원, 명)

	2014년	2016년	2018년	2020년	2022년	2024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전체 매출액	15,041	25,841	34,575	44,756	68,137	95,076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2025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이에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명의대여 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대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명의대여 행위를 차단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참고로 등록·신고 영업자의 명의대여를 금지한 유사 입법례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³⁾에서는 명의대여 금지 위반 시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직업안정법」⁴⁾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가 명의대여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5년

3)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명의 대여의 금지) 결혼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영업정지 등)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단서 생략)

4. 제9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제2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9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자

4) 「직업안정법」

제21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1조를 위반하여 성명 등을 대여한 자와 그 상대방

이하의 정액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명의대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며, 과태료를 벌칙으로 상향하는 내용은 동의한다는 의견임. 다만, 명의대여를 등록취소 사유로 하는 것은 다른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와의 균형 및 선량한 대중문화예술인 등의 피해가능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명의를 빌린 상대방에 대한 벌칙도 함께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379

협회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한국연예제작자 협회 (‘26.4.8.)	• (현행 유지) 입법 추진 당시 업계 전체가 등록제 도입 등 진입 장벽을 높이는 한편, 종사경력을 갖춘 경력자들이 신규 자본 기업에 영입되어 경영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재취업·상생의 기회를 열어두었음. 본 개정안은 이러한 배경을 간과하고 종사 경력자의 활동을 범죄화할 위험이 있음 • 현재 업계 내에서 고의적인 명의대여로 시장질서가 중대하게 교란된 구체적 실증 사례가 부재함에도 명의대여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 기준이 미비한 상태에서 처벌 강화는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규제 신설 보다 업계 자율적 정화가 바람직하다고 판단 ※ (협의 완료) 자문, 경영 노하우 전수 등 실질적 활동과 관련없이 명의만을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라는 점을 안내하고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필요성은 존재함을 협의하였음
한국매니지먼트 연합 (‘26.4.14.)	• (현행 유지) 개정안의 취지는 납득할 수 있으나, 등록 취소와 벌칙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하고, 명의대여 행위가 기존 등록 취소 및 벌칙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에 준하는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음 • 소수 기획업자를 제외하고 대부분 명의 대여에 따른 수익이 큰 의미가 없는 상황에 해당하여 실효성이 부족하고, 벌칙 규정은 과태료에 비해 적용이 어려워 과태료가 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 ※ (협의 중) 형벌과 행정적 제재를 병과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고, 명의대여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미등록 상태의 영업에 해당하고 이는 벌칙 적용 대상이라는 점에 대해 협의 진행하였으나, 회원사들과 논의 중
한국대중음악 산업협회 (‘26.4.16.)	• (이견 없음) 개정안의 핵심인 명의대여 규제 강화는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건전한 질서 확립과 산업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